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9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6월 17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디자인재단은 현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울시장 승인 전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, 서울디자인재단의 주무관청은 서울시로 승인권자와 허가권자가 동일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제 5조제2항의 문구는 중복됨으로써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“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로 함(안 제7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「민법」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이사회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<u>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목적</u></p> <p>2. <u>명칭</u></p> <p>3. <u>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</u></p>	<p>제5조(정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</p>

4. 회계에 관한 사항
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6. 해산에 관한 사항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7.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결  
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 
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 
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자본금 및 출연금
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6. 이사회의 운영
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
8. 예산과 회계

9. 정관의 변경

10. 해산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 
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  
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 
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  
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 
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및 출연금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예산과 회계
9. 정관의 변경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<u>재단의 정관에는 「민법」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이사회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회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해산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</p> <p>7. <u>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 <u>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정관) ① <u>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목적</u></li> <li>2. <u>명칭</u></li> <li>3. <u>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</u></li> <li>4. <u>자본금 및 출연금</u></li> <li>5. <u>임직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이사회의 운영</u></li> <li>7. <u>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</u></li> <li>8. <u>예산과 회계</u></li> <li>9. <u>정관의 변경</u></li> <li>10. <u>해산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11. <u>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